[별지 제1호 서식]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23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3년 4월 7일

학교법인 창성학원

감사 :

감사 :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: 창성학원 관리과장

성명 :